



“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”

우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75/전송(02)790-6581  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급여팀장 고영옥[6572] 팀원 유슬기[6575]/E-mail 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5659호

시행일자 2024. 3. 4.

수신 각 시도지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회장, 한국여  
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

참조

제목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(2024. 3. 4. ~ 2024. 3. 10.)

1.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(건강보험 고시안내)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
2. 이에, 2024년 3월 4일 ~ 3월 10일까지 「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>공지·뉴스 > 건강보험 고시 안내」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연번	안내일자	고시 번호	제목
1	2024.3.4.	[고시 아님]	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2024-11호) 집행행정지 안내(레이본정 등 3품목)
2	2024.3.6.	[고시 아님]	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(고시 제2024-33호) 및 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고시 제2024-34호) 집행 집행행정지 안내(「관절경 수술 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제」 11개 항목(중분류코드 250099) 변경 전 본인부담률 80% 적용 및 「별지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 내 아주약품(주)(치료재료 코드 M2099004)에 대하여는 변경 전 상한금액 148,720원 적용)
3	2024.3.8.	제2024-45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(유치도노관 삽입 및 교체일자 분리, 제거일자 추가를 통해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)

연번	안내일자	고시 번호	제목
4	2024.3.8.	제2024-46호	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」 일부개정(유치도노관 삽입 및 교체일자 분리, 제거일자 추가를 통해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시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작성요령 변경)

※ 건강보험 고시 안내(URL) : <http://www.kma.org/notice/sub16.asp>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